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49
----------	-----

제출년월일 : 2019. 08.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국민주택 건설·공급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주택자금의 관리를 위해 1977년부터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용하여 왔으나, 현재 세입재원이 미미하며 또한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 나. 종전의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귀속함(안 부칙 제2조제1항)
- 다. 종전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함(안 부칙 제2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19. 6. 7. ~ 2019. 6.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비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비대상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이 조례 시행일에 평창군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조례 시행일에 평창군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공영주택법

[시행 1963. 12. 31] [법률 제1457호, 1963. 11. 30, 제정]

[시행 1973.1.15.] [법률 제2409호, 1972.12.30., 타법폐지]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가 정부와 협조하여 공영주택을 건설하여 주택이 없는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에 의한다.

1. "공영주택"이라 함은 정부로부터 대부 또는 보조를 받아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여 주택이 없는 국민에게 저렴한 가임 또는 가격으로 임대 또는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영주택의 건설"이라 함은 공영주택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함을 말한다.
3. "공영주택의 공급"이라 함은 공영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함을 말한다.

제18조 (주택사업특별회계) ①공영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정부의 대부금·보조금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부담금과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으로 편성한다.

③공영주택의 건설 또는 공영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정부가 지방자치체인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금을 대부 또는 보조함에 있어서는 각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체는 자체부담금을 부담한다.

부칙 <제1457호, 1963.1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관리하고 있는 주택은 이 법에 의한 공영주택으로 본다.

부칙 <제2409호, 1972.12.30.> (주택건설촉진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공영주택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영주택법에 의하여 이미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 및 ⑤ 생략

⑥(동전)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된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73. 1. 15] [법률 제2409호, 1972. 12. 30,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에 대한 계획성 있는 주택의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및 건실한 주택용 건축자재의 생산·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는 자금등으로 건설하여 주택이 없는 국민에게 저렴한 가임 또는 가격으로 임대 또는 분양(이하 "공급"이라 한다)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영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집단으로 건설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제4조 (국민주택자금의 조성) 국민주택자금은 한국주택은행(이하 "주택은행"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이를 조달한다.

제13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운용) ①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국민주택건설계획 및 자금운용지침에 따라 국민주택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자금의 조달과 관리·운용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부담금,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이 특별회계에 소속하게 되는 재산으로 편성한다.

④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2409호, 1972.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공영주택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영주택법에 의하여 이미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의 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의 생산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 제27조에 의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 이전에 주택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동전)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된다.

주택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전부개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2019. 3. 19] [법률 제1600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제84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 12. 30.] [평창군조례 제2262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 12.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택사업” 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사업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의 수선 및 개량을 말한다. <개정 00.3.2>
2. “국민주택사업” 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주택사업” 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군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 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 장 농어촌주택사업

제5조(세입)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 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운용) ①자금은 이를 군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용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 채권 관리 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계 인수서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신청) ①군수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1·9·15>

②농어촌주택사업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81·7·15>

③삭제 <00.3.2>

제9조(보조 및 융자) ①군수는 및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00.3.2>

②군수가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서 삭제 00.3.2>

1. 삭제 <00.3.2>

2. 주택개량사업

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율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혼합자금인 농어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 상환

이자납기 : 매분기 말일

나. 삭제 <00.3.2>

다. 삭제 <00.3.2>

라. 삭제 <00.3.2>

마. 삭제 <00.3.2>

3. 택지조성사업

이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전문개정 81·7·15]

제 3 장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

제10조(세입세출) 삭제 <00.3.2>

제 4 장 국민주택사업

제11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는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13조(융자조건 등) ①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할부금의 상환) ①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5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 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 삭제<2016. 12. 30>

제 5 장 보 칙

제17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연락처	(033) 330 - 2470